

##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 - 69호

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11월 12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상 생활에 위협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라.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11월 17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
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
3) 전자우편: [charity81@korea.kr](mailto:charity81@korea.kr)

### 4. 제정안: 붙임

##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생활주변 위험수목”(이하 “위험수목”이라 한다)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,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낙뢰, 폭설, 태풍,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추진 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)**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실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
2.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

3. 수요조사,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

4.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위험수목 등 별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

2.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「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6조(지원대상)**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

2.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

3.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

4.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.

1.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

2. 유실수, 조경수, 정원수,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

3. 농경지, 축사,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, 낙과,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
4.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
5.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
6.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7.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
8.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지원신청)**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붙임 1]

## 대상 위험수목 위치도 및 현황 사진

위치도	
전경 사진	근경 사진





#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

나. 관련조문 :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(안)  
제5조(지원사업)

## 2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지원

나. 비용추계의 결과

- 100,000천원 / 재해위험수목제거지원사업
- 75,000천원 / 위험수목제거 장비 임차

다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년도	세부사업	편성목	예산규모	비고
2025	재난안전 활동	시설비	100,000	
2025	재난안전 활동	일반운영비	75,000	

3. 재원조달방안 : 군비 조달

4. 연도별 비용추계표(2025~2029) : 별첨 참조

5. 작성자 : 김종규 의원

<별첨>

<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입							
세출	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875,000
시설비	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일반운영비		75,000	75,000	75,000	75,000	75,000	375,000
재원 조달	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875,000
의 존 재 원	소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	...						
자 체 재 원	소계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875,000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	군비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175,000	875,000
지방채							
기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민의 책무)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,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·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